**민원 인쇄**
인쇄자: 김명호

## 신청 정보

| | |
|---|---|
| **신청번호** | 1AA-2610-0340623 |
| **신청일** | 2026-10-09 09:06:44 |
| **신청인** | 김명호 |
| **신청인 구분** | 개인 |
| **주소** | |
| **진행상황 통지방식** |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 **민원답변 통지방식** |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
| **유선전화** |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mkim1795@daum.net |
| **보안 설정** | 아니요 |

## 민원 신청 내용

| | |
|---|---|
| **민원종류** | 일반민원 |
| **제목** | 국민 권익 위원회 감사과 박재현에게 |
| **내용** | 10.8일 뼛속까지 도둑년 근성에 찌든 은평구청 도둑년 이희자의 개헛소리 답변 (첨부자료) 받았기에<br>알기 쉽게 다시 한번 사건 설명한다<br><br>국민신문고 민원(1AA-2609-1318825)과 https://seokgung.com/corrupt9.htm으로부터 알겠지만<br><br>1.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의 핵심 수단은<br>관리소장이 자기 꼴리대로 업자 선정하여 터무니 없는 가격을 관리비로 지불하고 그 일부를 받아 처먹을 수 있는 수의계약이다.<br>(1) 정부와 국토부는 이러한 수의계약에 의한 도둑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

| | |
|---|---|
| | 관리법] 제28조에 수의계약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br>(2) 그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었는가를 입증하는 영수증을 "세금 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 영수증" 3가지로 한정시켜([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호) 놓았다.<br><br>2. 은평구 10단지-1의 관리소장 임상현이 수의계약서 공개하지 않기에, 본인은 그 증거물을 2023.9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스캔해서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eunpyeong10에 올려 놓았고, 그걸 근거로 신고하여 은평구청에서 2026년8월 감사하게(첨부자료2) 되었는데...<br><br>어처구니 없게도<br>3. 감사 담당 이희자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호 위반 감사 거부하였다.<br>그 이유는<br>(1) 은평구청 주택과 직원년놈들 전부 "수의계약 관련 법조문 위반 방조"하며 관리비 도둑질에 가담하고 있고<br>(2) "17년간 아파트 관리비 400억원 횡령" 노컷뉴스(2026.8.19) 등 빈번하게 터지는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 사건들로부터 명백하듯이, 전국의 대다수 아파트 입주민들도 공무원들이 적극 가담하는 도둑질에 당하고 있는 것이다.<br>(3) 결론: 이희자는 전국적인 아파트 관리비 거대 도둑 조직 믿고, 거짓말과 공문서조작으로 뻔뻔 당당하게 나오는 것.<br><br>4. 국민 권익 위원회가 진정으로 "국민 권익 보호 기구"라면,<br>대다수가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 위하여 공무원 아파트 관리비 도둑년놈들 일망 타진해라.<br><br>자세한 건 ⇒ https://seokgung.com/eunpyung10/corrupt9x.htm#hjlee2 |
| **첨부 파일** | hjlee1008.pdf official.jpg |

## 기피부서 정보

| | |
|---|---|
| **기피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주택건축민원과 |
| **기피유형** | 공무원 비리 |
| **기피자 정보** | 조흥래 |
| **기피사유** | 조흥래 이 시-발놈은 국민신문고(1AA-2609-0725878)의 민원신고대상이 은평구청임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에 이송시켰다. 쳐죽여도 시원찮은 개돼지다 |

## 처리기관 정보

| | |
|---|---|
| **처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감사담당관) |

| | |
|---|---|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610-0360497 |
| **접수일** | 2026-10-10 18:20:02 |
| **담당자(연락처)** | 박재현 (044-200-7092) |
| **처리예정일** | 2026-10-29 23:59:59<br>※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br>(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답변 내용

| | |
|---|---|
| **통지일** | 2026-10-20 14:46:26 |
| **처리결과(답변내용)** | 1.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1AA-2609-1318825, 1AA-2610-0340623)의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br><br>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는 아파트 관리에 부당함이 있어 우리 위원회가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을 이송하였으며 소관 기관에서 이 민원에 답변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민원 이송 및 소관 기관의 답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귀하의 민원을 우리 위원회가 직접 재검토 해주기를 요청하시는 취지로 이해됩니다.<br><br>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한 사항을 답변드립니다.<br><br>가. 귀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1AA-2609-0725878)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 소속 조OO 조사관이 검토를 진행하여 이 민원을 서울특별시 은평구(감사담당관)로 이송한 사실이 확인됩니다.<br><br>나. 먼저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시고 불편함을 겪은 사실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br><br>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 문서를 지체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제8조 제1항은 '민원과장은 배정받은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등의 소관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을 해당 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접수한 민원의 내용이 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 소관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민원을 의무적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br><br>라. 우리 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는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이 '공동주택 관리에 행정청의 행정지도와 감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이 민원을 소관 기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송하였습니다. |

| | |
|---|---|
| | 마. 이와 같은 민원의 이송은 법령에 따른 조치였다고 판단되며 한번 이송한 민원을 이송기관에서 철회 혹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민원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사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바. 우리 위원회는 귀하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br><br>4.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실 박재현 조사관(☏ 044-200-70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br>5. 또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의 답변을 확인하신 후, 답변과 처리과정 등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첨부 파일** | |

**만족도 결과**

| 질문 | 답변 |
|---|---|
|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매우불만 |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 미해결 |
| **한마디 더** | |
| 박재현 개돼지 시-발놈에게<br><br>예상했던 대로...<br><br>1. 니들 개돼지들이 하긴 뭘 하겠냐?<br>그저 명칭만 "국민 권익 보호"라는 간판 달고 세금월급 삥땅하는 거지<br><br>2.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하는 은평구청 조사"하라는 민원을<br>도둑질하는 은평구청으로 이송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br>그리고 뭐? 법조문이 어쩌구 저쩌구...<br><br>공자 앞에서 문자 쓰냐?<br>야, 이 돌머리야<br>법은 최소한의 상식이야<br>그 말은 상식에 어긋나면, 법 위반 내지 법 적용 잘못했다는 거야 | |

| 질문 | 답변 |
| --- | --- |

3. 은평구청에게 "수의계약서 공개" 관련 [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호 위반에 대한 조사 촉구하고 불응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게 그렇게도 힘든 일이냐?

아니면,
"국민 권익 보호 사기 집단"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텐데,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 비호하며 니들도 숟가락 얹은 거냐?